

내부회계관리규정

제정 2003. 6.25.

개정 2007. 5.11(개폐정리)

개정 2009. 8.21(개폐정리)

개정 2013. 4.30(개폐정리)

개정 2015. 6.30(개폐정리)

개정 2017. 1.25(개정)

개정 2020. 6. 3(개폐정리)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폐정리 2007.5.11, 2015. 6.30><개정 2017.1.24.>

제2조 (적용범위)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내부회계관리”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·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.
2. “내부회계관리제도”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.
3. “내부회계관리자”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보고등을 위하여 사장이 지정한 본부장을 말한다.<개정 2009.8.21>

4. “회계정보”라 함은 거래의 발생 및 보증채무이행, 자산·부채의 평가 및 결산 보정 등의 회계처리를 요하는 회계관련 사건을 말한다.
5. “회계기록”이라 함은 회계정보를 회계처리 하여 작성된 분개장 및 관련 보조부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의 회계관련 산출물을 말한다.

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

제4조 (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) ① 회계정보의 식별·측정·분류·보고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09.8.21., 2017.1.24>

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.

제5조 (회계업무의 처리) ① 회계정보는 이를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자산, 부채, 자본, 수익, 비용 등으로 분류·기록하여야 한다.

② 자산·부채의 평가기준, 수익·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침과 절차에 관하여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사장은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인(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09.8.21>

③ 모든 회계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회계거래 작성,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“회계규정” 및 “회계규정시행세칙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 (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내부검증) ① 회계단위관리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오류발생을 통제하여야 하고, 필요시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점검 및 내부검증결과 발견된 오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하여야 한다.

제7조 (회계기록의 관리·보존) ①회계정보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한 회계기록은 문서규정에서 정한 보유기한까지 관리·보존하여야 한다.

②사장은 회계기록이 재난이나 도난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공사 내의 전산 시스템과 별도로 Back-Up 시스템을 갖추어 동시에 기록을 관리·보존하여야 한다.

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3장 조직 및 운영

제8조 (운영책임자) 사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9조 (내부회계관리자) ①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업무담당 본부장으로 한다.<개정 2009.8.21>

② <개정 2009.8.21.> <삭제 2017.1.25>

③ <삭제 2017.1.25.>

④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원활한 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각 부서 별로 관리·운영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 (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점검 및 보고) 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은 사업 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상급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본조개정 2017.1.25>

제11조 (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등) ①임·직원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·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상급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2017.1.25.>

②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점검하여 시정,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

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또는 상근감사위원회에 이를 고지 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1.25.>

④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자와 상근감사위원회는 보고자의 신분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1.25.>

제4장 보 칙

제12조 (징계 등) 이 규정을 위반한 임·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 (규정의 제·개정 및 세부사항)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 다만,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등은 사장이 정한다.<개정 2017.1.25.><개폐정리 2020. 6. 3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사규의 개정) ①사규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별표 사규분류표 제5편중 5-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편 별	분 류	사규번호	사 규 명	소관부서
제5편	총 무	5-14	내부회계관리규정	기획부

②이사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 “이사회결의규정”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구 분	규 정 명
총 무	내부회계관리규정

부 칙 <2007. 5. 11>

이 규정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 8. 21>

이 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4. 30>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6.30>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1.25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사규의 개정) 이사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[별표] ‘이사회결정규정’ 중 다음을 삭제한다.

구 분	규 정 명
재 무	내부회계관리규정

부 칙 <2020. 6. 3>

이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